

춘천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354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 29. 접수 제3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2.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2020. 11.경부터 대출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차전133689)은 2021. 6. 10. “C은 원고에게 42,036,333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2021. 7. 8.까지 연 9.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 1. 28. 아들인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 29. 접수 제3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은 2020. 1. 28.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은행에 2,000만 원 대출채무 및 기업은행에 161,946,000원, F은행에 1,529,000,000원, G은행에 105,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14,200,000원의 각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0. 1. 28. 당시 C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회사에서 월 48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자력 유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 29. 접수 제3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별지